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48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남인순·김태년·추미애

서영교 · 박홍근 · 서미화

전진숙 • 한정애 • 허종식

김남근 • 이수진 • 배현진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2008년부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진행이 부진한 상황임.

2008년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송파~강북도심간 급행철도 건설사업을 수립하여 2013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사업자의 포기로 무산된 바 있고, 2014년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변경하여 수립하였으나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당초 수용인구인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 위례신사선도시철도 건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

하였음.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기확보하였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신속한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 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이 법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지연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제5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 일 대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례신사선"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 일대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이 하 "도시철도"라 한다)를 말한다.
- 2.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란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그 밖에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 사선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대하여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에 따른다.

제2장 위례신사선 건설 및 지원 등

- 제5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례신사 선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8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